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)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 관리카드 작성 및 영양 평가·지원
2.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·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
3.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적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

제3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)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 20개 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양사: 다음 각 목의 직무

가.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

나. 식재료 등의 구매·검수·조리·배식에 대한 지도 및 관리

다.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교육

2. 위생 업무 담당자: 다음 각 목의 직무

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

나.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

다. 급식소의 위생적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

라. 급식소 종사자의 개인위생에 대한 지도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,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·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·지도) ① 법 제7조제

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하여 감독·지도·평가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

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식재료 관리, 식단구성, 조리·배식 등 급식관리
2.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·안전 관리
3. 위생,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지도·관리 및 교육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
2.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
3. 예산집행의 적정성
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계획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의 방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
2.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·영양 관리 현황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
4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식생활 교육 현황
5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지원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급식소의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관할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급식소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표자

2. 급식소의 명칭

3. 설립주체

4. 급식소의 소재지

5.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

④ 센터의 장은 등록된 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의 운영자가 등록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종료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규칙 시행 전에 「식품위생법」 제7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하여 급식 영양·위생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「식품위생법」 제7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영양·위생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의3을 삭제한다.
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	처리기간 7일		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(법인은 법인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)			전화번호		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(법인의 경우에 한함)						
신청사항	급식소 명칭				설립주체	[] 국영 [] 공영 [] 민영		
	소재지				전화번호			
	급식소 유형	노인	[] 노인주거복지시설 [] 노인의료복지시설 [] 노인여가복지시설 [] 재가노인복지시설 [] 기타					
		장애인	[] 장애인거주시설 []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[]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] 장애인의료재활시설 [] 장애인쉼터 [] 기타					
	현원	명			집단급식소 신고 여부	[] 예 [] 아니오		
	1일 급식인원	계	아침	점심	저녁	간식	기타	
	종사자	계	영양사	조리원	요양보호사	사회복지사	기타	
	운영형태	[] 직영 [] 위탁			위탁형태	[] 위탁조리 [] 도시락 등 배달		
위탁업체 (위탁한 경우만 해당)	업소명칭 (신고번호)				대표자 성명			
	소재지				전화번호			
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

제출서류	없음		수수료	없음				
처 리 절 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)						
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

(앞쪽)

제 호
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

- 대 표 자(법인명): (법인등록번호:)
- 급식소 명칭:
- 소 재 지:
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○○○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

직인

특이 사항		
연 월 일	사 항	확인(서명 또는 인)
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신고인(대표자)				
급식소 명칭	(등록번호)			
급식소 유형	노인	[] 노인주거복지시설 [] 노인의료복지시설 [] 노인여가복지시설 [] 재가노인복지시설 [] 기타		
	장애인	[] 장애인거주시설 []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[]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] 장애인의료재활시설 [] 장애인쉼터 [] 기타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대표자				
고유번호(사업자번호)				
급식소 명칭				
설립주체				
소재지				
집단급식소 신고여부				
변경사유				
등록증 분실사유				
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

제출서류	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부 ※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

(1쪽)

급식소 등록관리대장(○○○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)						
1. 등록사항						
급식소명						
등록번호	제 호		등록일	년 월 일		
대표자						
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급식소 유형				현원	명	
1일 급식 인원 (명)	계	아침	점심	저녁	간식	기타
운영 형태	직영·위탁			위탁형태		
종사자 수	계 명 (영양사____명, 조리사____명, 사회복지사____명, 요양보호사____명, 기타____명)					
위탁급식 (위탁한 경우만 해당함)	위탁일시	업소 명칭		대표자	업소 연락처	

2. 등록변경사항

연월일	내 용	기재자 성명	연월일	내 용	기재자 성명

3.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 현황

일시	내 용	일시	내 용

4. 대상별 교육 현황

일시	교 육 대 상 /교 육 내 용	일시	교 육 대 상 /교 육 내 용

5. 기타

일시	내 용	일시	내 용

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종료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측시	
신고인	성명	(법인은 법인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)				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(법인의 경우에 한함)					
급식소	급식소 명칭			등록번호			
	소재지						
	급식소 유형	노인	[] 노인주거복지시설 [] 노인의료복지시설 [] 노인여가복지시설 [] 재가노인복지시설 [] 기타				
		장애인	[] 장애인거주시설 []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[] 장애인직업재활시설 [] 장애인의료재활시설 [] 장애인쉼터 [] 기타				
종료일	년 월 일						
종료사유							
등록증 분실사유							

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을 종료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

제출서류	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부 ※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	수수료 없음					
처 리 절 차								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신고인		처리기관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)						